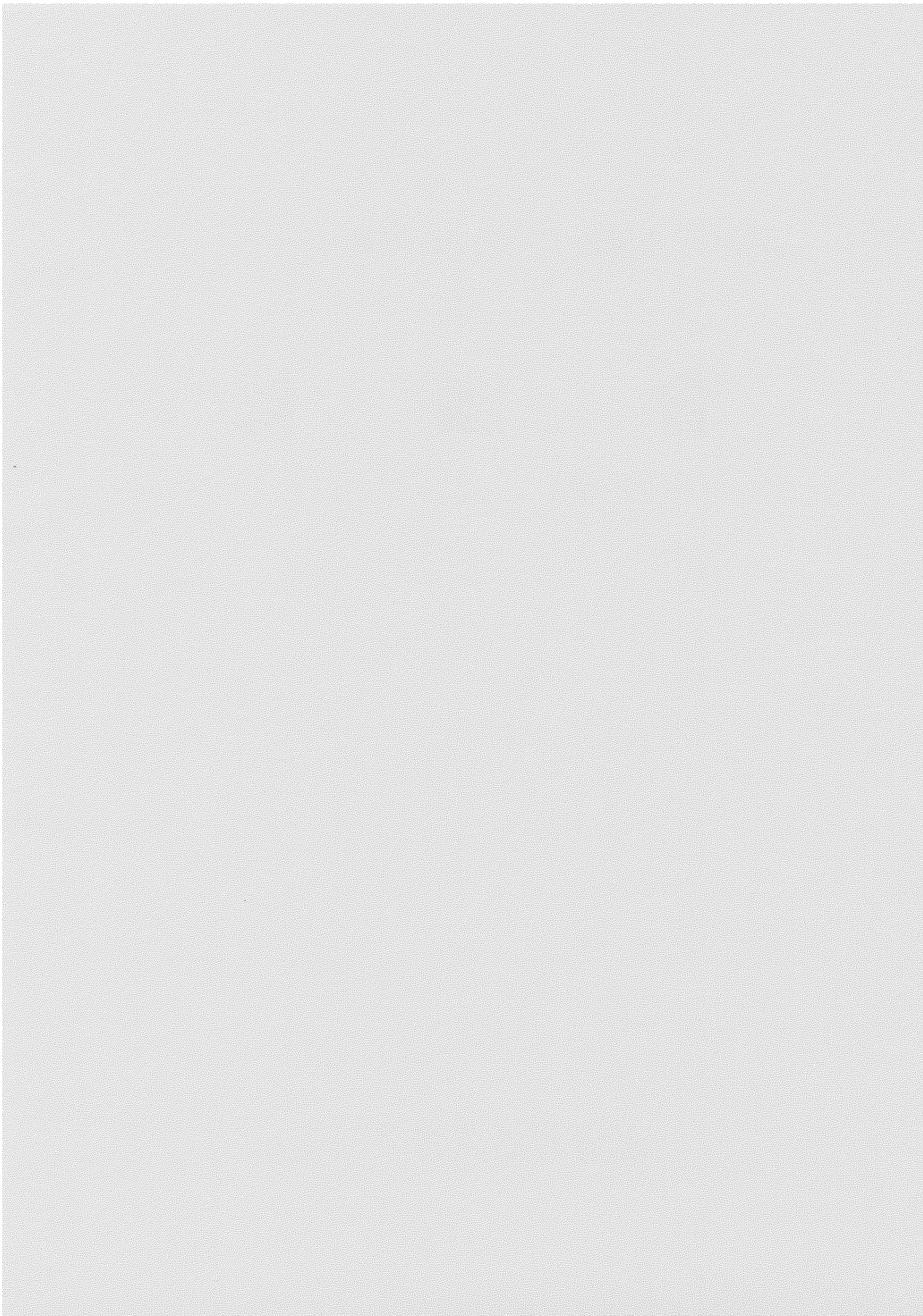


第15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3.1.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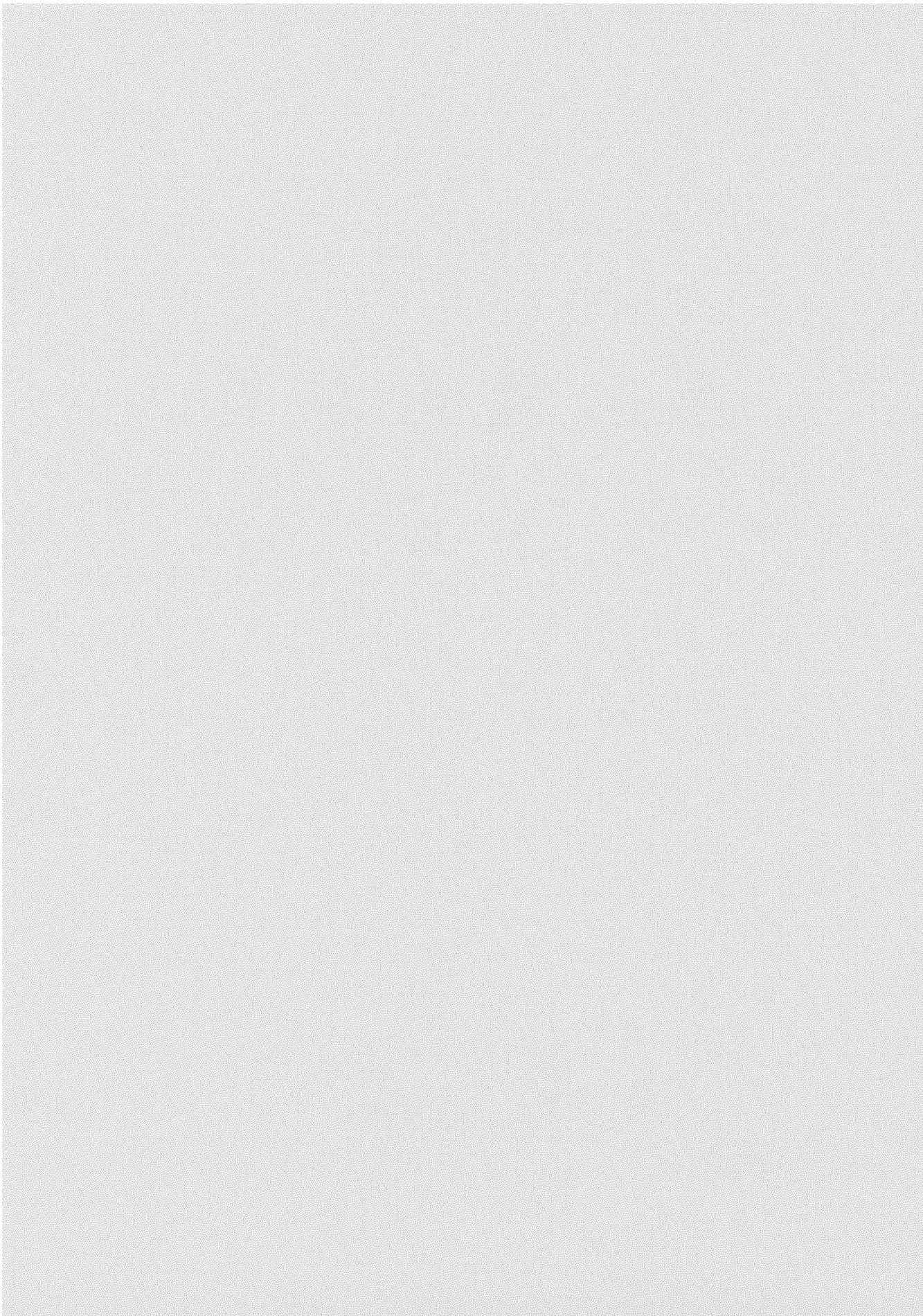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5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13
II.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5
III.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9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23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5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01분

開會式順(第15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1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정무 초등교육과장님과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님께서 교육부 주관 과학영재교육 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제150회-제1차 본회의]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3-2호로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 하였으며, 같은날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3년 1월 4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회 후에는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1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추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더불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을 6명으로 하고, 부칙에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둘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보은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2003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4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의 보은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례안 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

[제150회-제1차 본회의]

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여섯 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으며, 개정조문 내용이 간단한 바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성영용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 시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1월 29일 (수요일) 15시 02분

議事日程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02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신건환 공보감사 담당관계서는 교육부 주관 감사업무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3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침묵)

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제150회-제2차 본회의]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1.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고 규 강

위 원 성 영 용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50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1. 28. ~ 1. 29.(2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월 28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5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3. 1. 28. ~ 1. 29.(2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현장방문	
1월 29일(수) (15: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50-1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 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1
----------	-------

제출년월일 : 2003. 1.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총 무 과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은 6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조직·인력 보강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831('02.12.27)]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시정원은 12명”을 “한시정원은 6명”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제3조(한시정원) <u>한시정원은 12명</u>	제3조(한시정원) <u>한시정원은 6명</u>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516호)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제725호)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 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50-2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 월 20 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2
----------	-------

제출년월일 : 2003. 1.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개정사유

2003학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계획에 없었던 보은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이 2003. 3. 1자로 폐지되어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함.

주요골자

2003. 3. 1일 폐지되는 보은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을 삭제함 (별표4).

개정근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

조 례 안 : 불 임

참고사항

- 소규모학교 통·폐합 : 분교장폐지(1교)

학 교 명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	충북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		2003. 3.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행정예고결과 이 건 없 음

덧 붙 임

- 신·구 조문대조표
- 관계법령 발췌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동광초등학교학림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등학교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계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치
주성초등학교 (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번지 략)							
동광초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u>동광초등학교하림분교장</u> (생)		<u>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u> 략)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